2024년 05월 09일 13시 30분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면제 대상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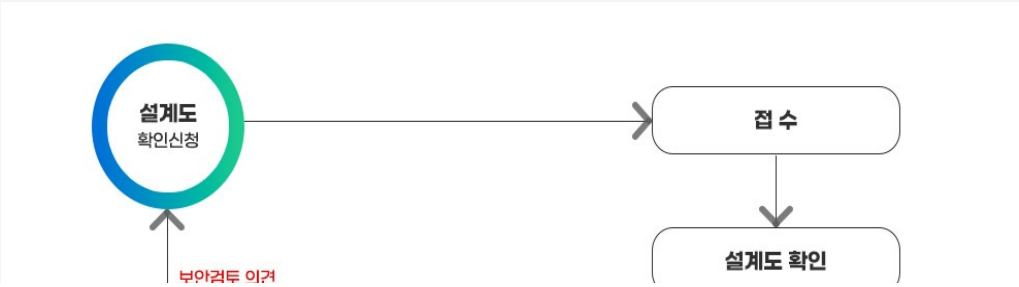

(http://www.mokp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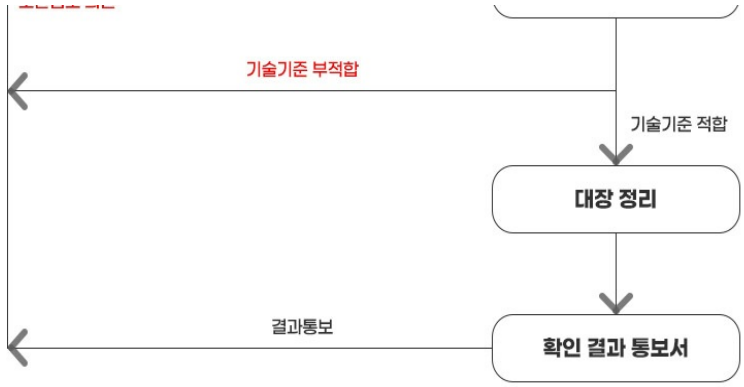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 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 (이동통신설비 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 1부
- (필요시) 위임장 1부

※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처리(구비서류를 세움터에 등록) 가능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서식 hwp파일 다운로드

수수료

없음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